

선거 프로그램 방송 실천 요강



방송사와 BSA가 공동 제정했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

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
Te Mana Whanonga Kaipāho

Level 2 | 119 Ghuznee Street
Wellington 6011 | New Zealand

T: (04) 382 9508 | **FREEPHONE:** 0800 366 996

Email: info@bsa.govt.nz

www.bsa.govt.nz

머리말

방송법(Broadcasting Act 1989)은 모든 방송사가 품위 및 건전성, 법과 질서, 사생활 보호와 같은 문제를 지키기 위한 기준을 프로그램에서 유지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BSA)는 기준 체계를 관리하고 공식 민원을 심의하며 방송사가 적절한 방송 실천 요강을 개발,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일을 합니다.

이 방송 실천 요강의 목적은 선거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규제하는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방송사는 모든 선거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권리장전법(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 제 14조에 따라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권리입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고, 또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기 위해 정보를 찾는 상황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뉴질랜드 권리장전법을 참작하고 적용합니다.

선거 프로그램이 이 요강에 담긴 하나 이상의 방송 기준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BSA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SA는 이러한 민원을 긴급히 처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선거 프로그램 방송 실천 요강 소개

선거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송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요강은 뉴질랜드 방송 기준 요강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방송 기준 요강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데 www.bsa.govt.nz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중요한 논쟁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뉴질랜드 방송 기준 요강의 '균형' 기준)은 선거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방송법 제73조 참조).

총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공정성, 정확성과 같은 방송 기준은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토론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선거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선거 프로그램에 관한 민원은 BSA에 직접 제기합니다.

‘선거 프로그램’이란?

‘선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정당이나 선거구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장, 설득하거나 그런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또는
- 정당이나 선거구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도록 권장, 설득하거나 그런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또는
- 선거구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프로그램; 또는
- 선거구 후보자나 정당에 반대하는 프로그램; 또는
- 선거와 관련해 열렸거나 열릴 모임을 알리는 프로그램

(방송법 제69조 참조)

선거 프로그램은 정당이나 선거구 후보자를 위해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짧은 홍보/캠페인 클립, 광고, 기사 형식 광고로 나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한 민원은 BSA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법원은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방송하는 프로그램만이 선거 프로그램에 해당되며, 방송사나 기타 제3자의 주도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The Electoral Commission v Watson & Jones, CA239/2015 [2016] NZCA 512, 20 October 2016).

선거 문제에 관한 기타 프로그램(예: 뉴스, 논평, 시사, 예능 또는 다큐멘터리)은 선거 프로그램 요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뉴질랜드 방송 기준 요강에 나오는 그 밖의 관련된 방송 기준은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은 먼저 방송사에 제기해야 합니다.

‘선거’는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나 보궐선거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선거 프로그램 요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선거 프로그램은 ‘선거 기간’(선거 공표일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에만 방송할 수 있습니다.

형의 선거 광고: 광고심의위원회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미디어(예: 인쇄물, 광고판, 팸플릿, 영화, 온라인, 소셜 미디어)의 선거 광고는 이 요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후보자/정당이 아닌 제3자가 여하한 미디어에서든(텔레비전 및 라디오 포함) 하는 선거 광고도 이 요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허용되는 경우, 이러한 선거 광고에 대한 민원은 광고심의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락처 참조).

편성물 선거 콘텐츠: 미디어 협의회

뉴질랜드 미디어 협의회 회원사의 편성물 콘텐츠와 관련된 선거 문제 민원은 뉴질랜드 미디어 협의회 민원 처리 절차를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락처 참조).

선거위원회

선거 프로그램(방송법에 의거)이나 선거 광고(선거법에 의거)와 관련된 기타 요구 사항(예: 후보자 진술, 자금 조달 및 승인)에 대한 민원 제기나 질의는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로 해야 합니다(연락처 참조).

선거 관련 콘텐츠 및 민원 제기처에 대한 자세한 안내 지침은 방송심의위원회 웹사이트(www.bsa.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민원의 근거

공식 민원은 방송사가 다음 방송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준 E1 - 다른 요강이 적용되는 선거 프로그램

기준 E2 - 선거 프로그램 지지 - 사실 정보와 의견/지지의 구별

기준 E3 - 폄하

기준 E4 - 오해의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

공식 민원 제기 방법

선거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민원은 반드시:

- 서면 형식이어야 합니다.
- 방송 후 6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BSA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민원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이것이 선거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민원이라는 사실
- 프로그램 제목
- 방송에 등장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 방송이 나간 곳(예: 방송국이나 채널)
- 방송 날짜 및 시간
-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방송 기준(이 요강이나 뉴질랜드 방송 기준 요강의 기준)과 그 이유

모든 방송 요강은 BSA와 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6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선거 프로그램의 특성상 방송 후 가급적 빨리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선거 프로그램 요강

다음 기준은 뉴질랜드에서 방송되는 모든 선거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기준

기준 E1 - 다른 요강이 적용되는 선거 프로그램

선거 프로그램은 공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 뉴질랜드 방송 기준 요강의 모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활발한 토론, 지지 및 정치적 의견 표현은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필수적 부분으로, 방송 기준은 이러한 맥락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지침:

E1a 이 요강의 특정 지침 외에도 뉴질랜드 방송 기준 요강의 지침 및 해설은 이 기준 E1에 따른 프로그램 평가의 토대를 이룹니다.

E1b 정확성 기준 평가:

- 미래 행위에 대한 약속(예: 선거 공약)은 사실에 대한 진술도 아니고 의견도 아니므로 정확성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기준 E2에 따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 약속의 근거가 되는 사실 진술은 정확성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 프로그램에 나오는 진술이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상식적인 시청자/청취자라면 선거운동의 맥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즉, 상식적인 시청자/청취자라면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후보자 정책의 투명한 홍보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 정확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진술별로(그리고 프로그램 전체의 맥락에서) 수행됩니다.
- 다음과 같은 맥락적 요소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지지 효과를 위한 축약이나 과장법 사용
 - 합리적으로 볼 때 시청자/청취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 예상할 수 있는 선거 문제 또는 정당 정책과 관련된 진술인지 여부

기준 E2 - 선거 프로그램 지지 - 사실 정보와 의견/지지의 구별

선거 프로그램에는 토론, 지지 및 의견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실 정보는 의견이나 지지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실 정보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침:

- E2a 사실 정보를 뒷받침하는 증거(예: 학술 연구, 전문가 의견)는 적절하고 탄탄해야 하며 쉽게 찾고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 E2b 정당/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선거 광고는 본질적으로 사실 정보라기보다는 매우 정치적이며 종종 과장된 지지 수단입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쉽게 구별 가능).
- E2c 이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는 진술별로(그리고 프로그램 전체의 맥락에서) 평가됩니다.
- E2d 진술이 사실 정보나 의견, 주장인 것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지 여부의 평가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의 맥락과 전달(어조 포함)
 - 진술의 정확성(정확한 문구)
 - 진술이 옳거나 그르다고(사실) 입증할 수 있는지 또는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누군가의 견해(의견 또는 지지) 인지 여부
 - 상식적인 시청자/청취자라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 프로그램에서 홍보하는 정당/후보자의 정치적 정체성, 평판 및 정책
 - 합리적으로 볼 때 그 진술이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의견이나 지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 특정 진술이 다른 보도에서(예: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기타 플랫폼에서) 상당히 다루어진 주제여서 합리적으로 볼 때 시청자/청취자가 투표 결정을 내림에 있어 고려해야 할 대안적 견해와 의견을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 E3 – 폄하

선거 프로그램은 정당/후보자에 반대할 수 있지만 정당/후보자를 폄하하는 자료를 담아서 안 됩니다.

지침:

- E3a “폄하”는 정당/후보자의 평판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E3b 총선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송이 이 기준을 위반해 정당/후보자를 폄하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종 악의나 양심의 요소가 내포된 높은 수준의 비난이 있었어야 합니다.

- E3c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사실 기반
- 정당/후보자에 대해 순수한 의도로 표현한 진지한 논평, 분석, 의견, 지지
- 정당한 유머나 풍자

기준 E4 – 오해의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

선거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이나 형식 또는 식별 가능한 유명인을 오해의 소지가 있게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지침:

- E4a 선거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이나 형식 또는 식별 가능한 유명인을 오해의 소지가 있게 모방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상식적인 시청자/청취자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즉, 상식적인 시청자/청취자라면 특정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선거 광고를 보고 있다고 인식할 것인지).

- E4b 이 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평가에는 관련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됩니다.

- 모방의 성격과 범위
- 정당/후보자 배너, 슬로건, 광고, 또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사한 식별 자료

모든 기준에 적용되는 지침:

- G1a 이 선거 프로그램 방송 실천 요강에 따라 제기된 민원에 대한 평가는 총선을 앞두고 언론의 자유가 지니는 특별한 중요성을 고려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발언에 부여되는 가치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 프로그램이 이 요강에 따른 기준을 위반했다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정도의 피해 위험이 있었어야 합니다(즉,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커야 함).

연락처

선거 프로그램 민원

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

PO Box 9213
Wellington 6141
전화: (04) 382 9508
무료전화: 0800 366 996
이메일: info@bsa.govt.nz
웹사이트: www.bsa.govt.nz

편성물 민원

New Zealand Media Council

PO Box 10 879
Wellington 6011
전화: (04) 473 5220
무료전화: 0800 969 357
이메일: info@mediacouncil.org.nz
웹사이트: www.mediacouncil.org.nz

선거 광고 민원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PO Box 10 675
Wellington 6143
전화: (04) 472 7852
무료전화: 0800 234 357
이메일: asa@asa.co.nz
웹사이트: www.asa.co.nz

기타 선거 정보

Electoral Commission

PO Box 3220
Wellington 6140
전화: (04) 495 0030
이메일: enquiries@elections.govt.nz
웹사이트: www.elections.org.nz